

가스관계법령 질의 및 해설②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1. 주택단지인 경우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압력조정기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압력조정기 1개를 설치, 가스 공급 가능 여부

Q 단독주택 32세대를 건축하는 주택단지인 경우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압력조정기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압력조정기 1개를 설치하여 가스를 공급하는 것은 가능한지

A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단지는 공동주택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제8호가목(15) '압력조정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압력조정기 1개를 설치한 후 단독주택 32세대에 가스를 공급할 수 없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서 도시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가스공급시설로 정의한 것은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책임을 가스공급자인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부과하기 위한 것이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역정압지를 통하여 저압의 가스를 공급받거나 중압의 공급관으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아 각 세대별로 압력조정기를 설치하여 가스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도시가스공급에 관한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가스공급여부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란다.

2. 사용자 공급관을 각층 세대내 발코니를 경유

하여 횡으로 설치 가능 여부

Q ① 사용자 공급관을 각층 세대내 발코니를 경유하여 횡으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② 동 장소에 사용자 공급관을 설치할 경우 비파괴시험은 어디까지 하여야 하는지?

A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사용자공급관'에 대한 정의를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물외벽)까지로 구분하고 있음을 볼 때 사용자공급관을 아파트 각 세대내 베란다를 경유하여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동 장소에 가스배관을 설치할 경우 검사·점검이 곤란하고 사유공간 침해논란의 소지마저 있다. 또한 동 규칙 별표 5제8호가목(3)(마)의 규정은 지하주차장, 아파트 복도 등 공용이 사용하는 장소(공용면적)에 부득이 본관 또는 공급관을 설치할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동 장소에는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린다.

3.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렌지 연결작업에 대한 시공업체의 법적인 면허사항

Q ①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렌지 연결작업에 대한 시공업체의 법적인 면허사항은?
② 도시가스 사용자 시설의 범위는?
③ 가스계량기 전단밸브의 개폐를 시공자 또는 사용자가 할 수 있는지?
④ 기 사용세대의 가스렌지 연결후 시공자의 자체점검으로 공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서류를 도시가스사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 점검을 받아야 하는지?

⑤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시공자 자체점검에 해당하는 범위는?

A ①에 대하여 :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다.
 ②에 대하여 :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용시설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에 이르는 배관·연소기 및 그 부속설비와 공동주택등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계량기를 말한다.
 ③,④,⑤에 대하여 :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 및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6-8-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제36조1.8에서 시공감리나 완성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스시설의 설치(변경)를 완료한 때에는 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누출검사와 시설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4.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제외되는 경우 통보 후 사용가능 여부

Q 공장에서 공정용으로 사용하던 도시가스시설을 철거하고 식당의 가스시설만 사용하게 되어 사용량이 2,000m³ 미만이 되는데

- ①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통보 후 그냥 사용하면 되는지?
- ② 정압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A ① 특정가스사용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의제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의미하므로 실제 사용량과는 무관하다. 도시가스시설의 일부 철거로 인하여 귀사의 시설이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및 제외되는 경우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는 귀공장의 도시가스시설 검사를 담당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해당 지역본부(또는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란다.
 ② 귀사의 시설이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제외되는 경우라

도 가스공급방식을 변경하지 않고 정압기를 계속 사용할 경우 해당 정압기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명시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정압기 분해점검 등)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5.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단독사용자용 정압기에 예비정압기 설치 시 변경검사 여부

Q ① 기존(1992년 12월)에 설치되어 있는 단독사용자용 정압기에 질의 도면과 같이 예비정압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변경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 ② 또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 기계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하는지?
- ③ 건축물 내부의 지하층에 설치된 기존 정압기의 경우 변경공사가 없어도 가스누출경보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A ①에 대하여 :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압기 또는 압력조정기를 변경하는 공사는 완성검사 대상에 해당한다.
 ② 및 ③에 대하여 :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부칙(97.9.12) 제5조 시설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여 기계환기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6.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온수보일러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자가 관련협회 비회원(개인)인 경우 보험가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

Q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온수보일러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자가 보일러설비협회 또는 열관리협회에 등록된 자가 아닌 비회원(개인)인 경우 보험가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A 2003.9.30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64조제2항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공자의 범위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온수보일러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자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시공자 의무보험가입은 개인 및 단체 가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귀하께서 가까운 보험사를 방문하시어 가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

7. 해당기관에 도시가스공사계획신고를 득하여 공사도중 시공관리자 변경 경우 해당기관에 법적 처리절차

Q ① 해당기관에 도시가스공사계획신고를 득하여 공사도중 사정에 의하여 시공관리자를 변경할 경우 해당기관에 신고의무 또는 법적 처리절차가 있는지 여부
 ② 해당기관에 도시가스공사계획승인 및 신고를 득하고 공사도중 사정에 의하여 당초 승인(신고)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해당기관에 신고의무 또는 법적 처리절차가 있는지 여부

A ①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후 공사를 하던 중 시공관리자를 변경하는 것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 승인(신고)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동 사항을 공사계획의 승인권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② 공사계획 승인관청에서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를 얻은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신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사계획의 승인(신고)업무는 시·군·구의 고유업무이므로 공사기간을 초과하여 가스시설을 시공하는 경우 해당관청에 공사기간 연장(신고) 후 계속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8. 주정압기와 예비정압기를 각각 용량과 기종이 다른 제품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Q ① 주 정압기와 예비정압기를 각각 용량과 기종이 다른 제품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② 주 정압기와 예비정압기는 동일 기종으로 하고 용량은 달리 설치한 후 가동 시 동일용량으로 교체할 수 있는지?
 ③ ①·②의 경우에 기술검토 및 공사계획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A ①·②에 대하여 : 도시가스사업법령에는 주정압기와 용량과 기종이 다른 예비정압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예비정압기를 설치하도록 한 취지가 주정압기를 분해점검하거나 이상발생·고장 등으로 인하여 수리하는 경우에 예비정압기를 통하여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함이므로 예비정압기는 가스의 수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③에 대하여 : 압력조정설비의 용량 또는 기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 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동법 제 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9. 하천매설시 설치하는 방호구조물 규격에 대하여

Q 하천매설시 설치하는 방호구조물을 아래와 같은 규격으로 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1안 : 가스배관의 외면에 고무판(3.2t)을 부착하고 60mm 두께의 콘크리트 방호구조물을 사각형태로 설치
 - 2안 : 가스배관의 외면에 PE(3.5T)와 콘크리트(60mm 두께)를 코팅

A 도시가스사업법령에는 하천매설시 설치하는 방호구조물의 규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5제3호다목(8)(나)의 규정에서 하천 또는 수로를 횡단하여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2중관(보호관)으로 하거나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18-9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서 2중관(보호관)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방호구조물의 강도가 보호관과 동등 이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질의하거나 종전과 동일한 방호구조물의 규격으로 시공하여야 할 것이다.

10. 교량 확장공사로 인한 가스배관 이설 시 매설심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이중관 및 콘크리트 보강 후 계획하상높이와 2.5m 이상 유지하여 가스배관 설치 가능 여부

Q 수원시 소재 교량(경기교) 확장공사로 인한 가스배관(150A, 중압) 이설과 관련하여 동 하천에 오수차집관거 등 타시설물이 산재해 있고 암반층(풍화암 및연암)이 형성되어 있어 매설심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중관 및 콘크리트 보강 후 계획하상높이와 2.5m 이상 유지하여 가스배관을 설치할 수 있는지

A 하천 밑을 횡단하여 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 5제3호다목(8)(다)의 규정에 의하여 배관의 외면과 계획하상높이와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4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차집관거의 안전확보 및 암반층 형성 등의 이유로 부득이 규정심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질의 첨부된 교각의 기초설치기준에 근거하여 최소 연암층 이하로 이중관 및 부양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동 사항을 가스배관 공사계획의 승인관청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매설심도를 4m 이하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1. 가스배관 이설공사 구간 중 일부 구간이 하천의 암반으로 인해 기준매설심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하천매설심도를 3m로 시공 가능 여부

Q 가스배관 이설공사 구간 중 일부 구간이 하천(상천)의 암반으로 인해 기준매설심도를 유지하기 어려워 부득이 가스배관을 절연완충제와 Wire Mesh로 보호조치 후 콘크리트로 타설하여 시공하는 경우 하천매설심도를 3m로 하여 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A 하천 밑을 횡단하여 가스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 5제3호다목(8)(다)의 규정에 의하여 배관의 외면과 계획하상높이와의 거리는 4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질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지반조사 결과 하천바닥이 경암으로 판정되어 매설깊이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가스배관을 이중관 및 콘크리트 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규정심도 이하로 가스배관을 설치하는 것을 가스배관 공사계획의 승인관청에서 인정한다면 배관의 매설심도를 4m 이하로 하여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2. 소하천을 횡단하여 가스배관을 설치할 경우 매설심도는 얼마인지

Q 소하천을 횡단하여 가스배관을 설치할 경우 매설심도는 얼마인지?

A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다목(8)(다)의 규정에 의하여 배관의 외면과 계획 하상높이와의 거리는 2.5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13. 아파트 입상 가스배관에 절연플렌지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지

Q 아파트 입상 가스배관에 절연플렌지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지?

A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6제8호가목(2)(다)의 규정 및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12-4조 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에 매설되는 강관에는 전기방식조치를 하여야 하고 지하에 매설된 배관의 부분과 지상에 설치된 부분과의 경계에는 전기방식 효과를 유지하기 위하여 절연이음매 등을 사용하여 절연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절연이음매 등이란 전기절연이음관, 절연벨브, 절연플랜지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절연젤드 등을 사용하여 절연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절연플렌지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참고로 지하에 폴리에틸렌관 매설하는 경우에는 전기방식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14.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6제8호가목(3)(다)의 단서규정인 “하천과 병행하여 설치할 수 있다”의 해석에 대하여

Q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6제8호가목(3)(다)의 단서규정인 “하천과 병행하여 설치할 수 있다”의 해석을 아래 예시 4가지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

A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6제8호가목(3)(다)의 단서규정은 가스배관을 하천과 병행하여 설치하는 규정을 말하며 하수관 내부에 가스배관의 설치나 하천횡단에 대한 규정은 아님을 알려 드린다.